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7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8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9. 29.
판 결 선 고	2016. 10. 20.

주 문

1.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7

가. B은 2014. 8. 1.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인 C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 C의 사업 일체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B 소유이던 ① [redacted]시 D 잡종지 2,530㎡ 및 1동 폐기물감량화시설 330㎡, ② [redacted]시 E 잡종지 2,089㎡ 및 2동 폐기물감량화시설 330㎡, ③ [redacted]시 F 잡종지 2,196㎡ 및 1층 폐기물 재활용시설 326.4㎡, 부속건물 1층 사무실 84㎡ 2층 사무실 86.14㎡, ④ [redacted]시 G 도로 12㎡, ⑤ [redacted]시 H 도로 94㎡, ⑥ [redacted]시 I 도로 1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5.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 7,699,550원만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원고로 법인전환하면서 소멸한 C의 순자산가액인 2억 원에 미달하는 1억 4,000만 원을 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62,444,5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47,325,780원 및 지방교육세 4,732,560원의 합계 52,058,340원(가산세 포함)이 과세될 것이라고 통보(과세예고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2. 피고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redacted]도지사는 2015. 7. 9.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9,465,790원, 지방교육세 4,561,5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7

원의 합계 54,027,370원을 과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3인 출자 방식의 법인인 반면, B의 출자액은 1억 4,000만 원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인 C의 순자산가액인 2억 원보다 적고, 원고가 B에게서 취득한 J 건설기계 지게차 등 차량운반구 7대(이하 '이 사건 차량운반구'라고 한다)의 이전등록 원인이 매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나, 원고는 1인 출자 방식의 법인으로 B이 단독으로 2억 원 전액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차량운반구는 이 사건 포괄양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

2) 피고는 산출 근거자료 및 근거법령을 제시하여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시 과세처분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과세예고통지보다 1,969,030원을 더 많게 과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출자좌수 20,000좌,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총 자본금 2억 원의 법인으로 B이 2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작성된 201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7

6. 27.자 정관이 존재하고, 2015. 5. 31.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B이 지분율 100%로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4. 6. 27. 원고가 법인 설립등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정관에는 원고의 사원이 B(출자좌수 14,000좌, 출자액 1억 4,000만 원), K(출자좌수 5,000좌, 출자액 5,000만 원), L(출자좌수 1,000좌, 출자액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이 1억 4,000만 원, K이 5,000만 원, L이 1,0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출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14. 6. 30. 원고의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②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당시에도 법인 설립시와 동일한 위와 같이 3인이 출자하였다는 내용의 정관 등을 제출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3. 31.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식변동란에 '부'에 체크를 하였고, 2015. 4. 30.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의 주주 및 출자자로 B, K, L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법인 설립등기, 취득세 감면 신청시, 법인세 신고시 등 3회에 걸쳐 정관 등 관련서류를 착오로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3인 출자 방식의 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관련 업무를 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7

당하고 있는 M이 B에게 그 소유이던 이 사건 차량운반구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포괄양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동차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세금, 과태료 면제 등의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여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표명만으로 그 상대방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B과의 2014.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소유권을 이전등록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이전등록 원인이 매매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이전등록 원인을 이 사건 포괄양도 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3인 출자 방식의 법인으로 B의 출자금액은 1억 4,000만 원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운반구를 유형자산 중 40,467,934원으로 계상하여 자산가액에 포함시켰는바, 이를 모두 B의 출자액에 합치더라도 원고의 순자산가액 2억 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7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2호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7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전면에 과세연도, 세목(취득세, 지방교육세), 세액(취득세 49,465,790원과 지방교육세 4,561,580원의 합계 54,027,370원), 납부기한, 납부장소가 표기되어 있고, 후면에 세액산출근거 및 납부안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의 근거법령 및 세율이 표기되어 있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체납시 '체납된 지방세액의 3%의 가산금 및 1개월 이내 체납된 지방세액의 3% + 1개월 경과시 1.2% 중가산(60개월까지)한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과표대상)은 962,444,581원(토지 590,750,388원 + 건물 371,694,193원), 과세 예정 취득세는 본세 38,497,770원(토지 23,630,010원 + 건물 14,867,760원), 가산세 8,828,010원(토지 4,726,000원 + 건물 4,102,010원)의 합계 47,325,780원, 과세예정 지방교육세는 본세 3,849,770원(토지 2,363,000원 + 건물 1,486,770원), 가산세 882,790원(토지 472,600원 + 건물 410,19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7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등 각 본세의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아 이 사건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추상적으로 가산세액의 산정 공식이 설명되어 있을 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산세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표대상이 기재되어 있고 본세와 가산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통지서에도 역시 가산세의 구체적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상의 과세액과 액수가 다르고, 액수 차이의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하자가 있고, 과세예고통지 등에 의하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창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7

판사 한진희

판사 정성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7

관 계 법 령

■ 조세특례제한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7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①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제548조(출자의 납입)

①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7

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1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7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